

70年代의 財政

—豫算과 景氣의 相互作用—

韓 昇 洙*

〈目 次〉

- I. 머리말
- II. 財政의 安定效果
- III. 成長과 인플레이션의 財政效果
- IV. 맺음말

I. 머 리 말

財政은 巨視經濟의 各種 變數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또한 時差를 두고 이러한 變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도 한다. 財政의 經濟的 效果에 대한 分析은 머스그레이브流의 分類方式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대략 이것들은 資源配分에 대한 效果, 所得再分配에 대한 效果, 그리고 經濟安定에 대한 效果 등으로 區分된다고 할 수 있다.

本稿는 經濟安定의 側面에서 財政 특히 中央政府豫算이 1970年代에 걸쳐 國民經濟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財政은 逆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를 간략하게 구명하고자 한다.

II. 財政의 安定效果

經濟安定을 總需要의 측면에서 파악할 때 財政은 總수요의 構成을 결정하고 또 변화시키는 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다. 同一한 量의 總需要變化가 國民所得과 物價 중 어느 것에 더 유리한 方向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개 완전고용에 가까울수록 物價에의 壓力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그 반대일수록 物價에 대한 壓力보다는 實質所得上昇의 方向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그러므로 전체의 巨視經濟的 狀況이 주어지지 않은 채 財政단으로 그것이 總需要의 한 구성요소로서 物價 및 成長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미칠 것인지를 評價하기란 더욱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制約에도 불구하고 財政의 巨視的 效果를 가늠해보려는 시도가 있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이른바 財政效果要約指標(summary measure of fiscal influence)라고 할 수 있다.⁽¹⁾

지금까지 研究된 指標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巨視的 總量模型에서 필요한 모든 情報를 이용하여 巨視的 分析에 필요한 모든 計數를 推定한 뒤 이 推定된 計數를 이용하여 財政의 各項目別로 國民經濟에 대한 충격을 계산하여 합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모든 指標를 財政impact指標(fiscal impact measure)라고 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指標들은 첫째 財政外에도 다른 巨視的 資料가 필요하다는 점, 둘째 사용된 計量模型과 資料에 따라 推定된 計數의 값이 달라지고 따라서 同一한 財政活動이 다르게 評價될 수 있다는 점, 셋째 時間에 따라 變化하는 經濟에서 動學的 比較를 위해서는 各時點에 대하여 推定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이 「要約」指標로서의 制約點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財政impact指標는 巨視計量模型을 이용하여 그 영향의 정도를 정밀화하고 그 영향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에 따라 요구되는 情報 및 時間所要가 많아서 즉각적으로 간편하게 구하기가 힘들고 사용하는 模型 및 資料에 따라 計數 및 財政의 影響에 대한 評價가 민감하게 변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두번째 部類의 財政指標인 豫算指標(budget measure)는 財政의 收支를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으로서 계산의 용이함과 模型에 따른 결과의 變異性이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이 역시 經濟構造 및 經濟의 다른 部門과 相互作用하는 메카니즘 및 方法에 대한 高度의 抽象方法을 통하여 작성되므로 基本的으로 經濟의 운영메카니즘이 다른 나라에 적용할 때는 限界가 있으며 總量模型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財政의 流動性效果는 고려하지 못한다는 결점이 있다.⁽³⁾

(1) 이에 관한 서베이 논문으로서는 Alan S. Blinder and Robert M. Solow, "Analytical Foundations of Fiscal Policy," in *The Economics of Public Finance*,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1974; OECD, "Budget Indicators," *OECD Occasional Studies*, Paris, 1978을 참조할 것.

(2) 세번째 결점의 보완을 위해 OECD의 1978년도 방법에서는 본래적 의미의 한계성향 대신 대상 기간에서 나타난 평균성향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Ibid.*

(3) crowding-out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은행 민간으로부터의 차입을 조세와 같이 취급하는 방법도 있다. Sheetal K. Chand, "Summary Measures of Fiscal Influences," *IMF Staff Papers*, Vol. 24, 1977, pp. 407-409.

이러한 制約點을 감안하면서 우리나라의 中央政府財政이 總需要의 한 構成要素로서 어떻게 膨脹的 혹은 收縮的 작용을 했는지를 평가해 봄으로써 物價와 成長에 대한 영향을 간략히 分析하여 보기로 한다.

韓國財政의 安定側面의 評價를 위해 西獨에서 사용되는 景氣中立豫算(Cyclically Neutral Budget: CNB)의 概念을 약간 變形하여 使用하기로 한다.⁽⁴⁾

CNB는 다음과 같이 定義된다.

$$CNB_t = g_o A_t - t_o Y_t; \quad (1)$$

t_o : 基準年度の 實質 GNP에 대한 歲入의 比(T_o/Y_o),

g_o : 基準年度の 國內吸收(absorption)에 대한 歲出의 比(G_o/A_o).

원래 西獨의 CNB에서는 國內吸收가 아닌 潛在的 GNP를 사용하고 있으나 開發途上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國內吸收의 持續的 維持가 더 큰 관심사이므로 潛在的 GNP 대신 이것을 사용하였다. 즉,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完전고용과 관계되는 潛在的 GNP보다 지속적인 성장과 물가안정이 주요 관심사이며 또한 이와 같은 高度成長經濟에서는 潛在的 GNP概念 自體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 豫算의 景氣效果(Cyclical Effect of Budget: CEB)는 다음과 같이 定義된다.

$$CEB_t = (G_t - T_t) - CNB_t. \quad (2)$$

여기에서 陽의 CEB는 膨脹的 效果를 의미하고 陰의 CEB는 收縮的 效果를 의미한다. 基準年度の 規範的 水準(g_o, t_o)에 의하여 결정되는 매년의 CNB는 長期·中期에 걸쳐서 經濟活動이 財政收支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 景氣變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財政收支를 의미하므로 景氣調節의 影響은 實質財政收支와 CNB의 差, 즉 CEB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CNB와 CEB의 測定을 통해 財政의 影響을 여섯 가지 形態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CEB에 의해 膨脹 혹은 收縮 如否를 결정할 다음 基準年度の CNB와 그 해의 CNB를 비교하여 中立的(neutral), 反景氣的(countercyclical) 혹은 景氣促進的(procyclical) 如否를 결정할 수 있다.

財政의 影響指數로서 CNB를 신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基準年度の 規範的 收支狀態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적으로 有用한가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特性을 지닌 CNB方法을 적용하여 1976年과 1979年을 基準으로 分析한 結果는 <表 1>에 있으며, <그림 1>은 1979年을 基準으로 했을 때의 效果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每年의 CNB와 基準年度の CNB의 比較에서 當該年度の 것이 基準年度の 것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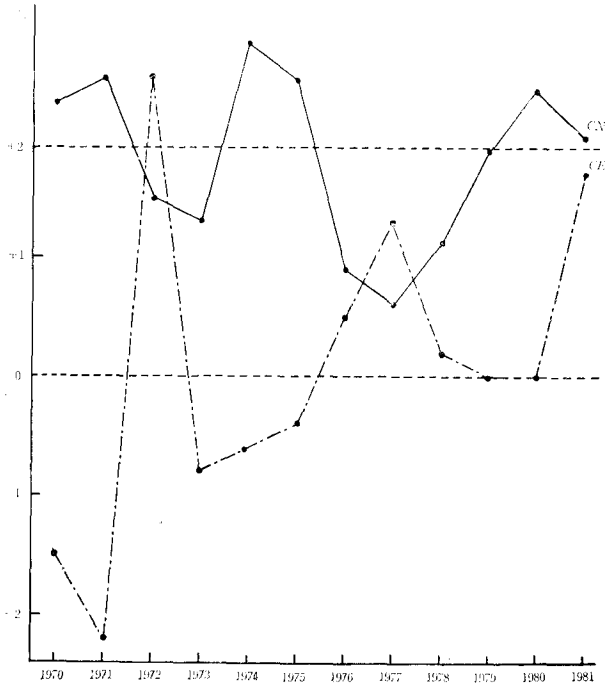
(4) 西獨의 CNB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Thomas F. Dernberg, "Fiscal Analysi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Cyclically Neutral Budget," *IMF Staff Papers*, Vol. 22, 1975를 볼 것.

〈表 1〉 豫算의 景氣效果

(單位: GNP의 %)

指 標	年 度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實質財政收支 ⁽¹⁾		0.8	0.3	4.0	0.5	2.2	2.1	1.4	1.9	1.3	1.9	2.4	3.7
CNB		2.8	3.0	2.0	1.8	3.3	3.0	1.4	1.1	1.6	2.4	2.9	2.5
CEB		-2.0	-2.7	2.0	-1.3	-1.1	-0.9	0	0.8	-0.3	-0.5	-0.5	1.2
△CEB		-	-0.7	4.7	-3.3	0.2	0.2	0.9	0.8	-1.1	-0.2	0	1.7
實質財政收支 ⁽²⁾		0.8	0.3	4.0	0.5	2.2	2.1	1.4	1.9	1.3	1.9	2.4	3.7
CNB		2.3	2.5	1.5	1.3	2.8	2.5	0.9	0.6	1.1	1.9	2.4	2.0
CEB		-1.5	-2.2	2.5	-0.8	-0.6	-0.4	0.5	1.3	0.2	0	0	1.7
△CEB		-	-0.7	4.7	-3.3	0.2	0.2	0.9	0.8	-1.1	-0.2	0	1.7

註: (1) 1976年 基準. (2) 1979年 基準.



〈그림 1〉 豫算의 景氣效果(1979年 基準)

크다는 것은 그 當該年度가 경기침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작다는 것은 경기 호황기에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을 보면 CNB가 基準年度보다 큰 해는 1970년, 1971년, 1974년, 1975년, 1980년, 1981년이며 이들 해는 景氣가 침체국면이든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시기를 뜻하며, 그 나머지 해에는 그 반대의 局面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 各年度의 CEB는 1972年の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景氣促進的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CNB方法에 따라 財政을 分析할 때 우리나라의 財政은 國民經濟의 變化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왔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巨視的 安定化政策은 財政政策보다 貨幣金融政策이 主軸을 이루어왔음을 보여주는 한 例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970年代 우리나라의 財政은 주로 巨視的 變動의 景氣促進的 役割을 해왔는데 財政의 對 GNP規模로 미루어 볼 때 그 영향은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⁵⁾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財政이 反景氣的, 逆安定化의 方向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期間 동안에 巨視的 安定化政策이 貨幣金融政策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것과 아울러 強力한 質的 規制·選別規制를 통한 產業政策⁽⁶⁾의 결과, 財政의 總量的 效果가 상대적으로 無視되었었다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구체적 產業政策에 의한 誘因(incentive)效果 뿐 아니라 政府主導의 經濟下에서는 政府에 의한 發表(announcement)效果도 크게 作用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財政의 硬直度 역시 財政이 反景氣的으로 作用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과중한 國防費負擔은 財政硬直度を 높여주는 큰 原因이 되고 있으며 70年代 이후 점차 財政의 社會開發的 機能이 요구됨에 따라 社會開發費 역시 財政硬直度を 높여주는 중요한 要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經濟的 原因 外에 豫算制度 自體에도 문제가 있는데 豫算이 行政的 便宜에 입각하여 편성되는 나머지 經濟的 側面이 無視되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制度上의 결점을 보완하여 豫算의 편성·집행·운영면에서 彈力性을 높이며 동시에 景氣調節機能을 강화하려는 目的으로 1973년부터 1975年 사이에 豫算會計法이 改正되었으나 經濟計劃과 豫算을 연결하는 制度的 장치의 不在로 말미암아 여전히 豫算編成이 單年度 中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前年度 豫算을 답습하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豫算의 運用의 妙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⁷⁾

구체적으로 財政의 움직임이 成長과 物價에 정확하게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문제는 國民經濟 全體에 관한 情報과 그에 따른 總體的 計量模型을 필요로 하는 방대한 作業이므로 本稿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나 위의 CNB分析을 통해서 볼 때 1970年代 우리나라의 中央政府財政은 總需要의 主要한 構成要素로서 成長과 物價變動에 安定的으로

(5) 국민경제의 승수가 2라고 할 때 GNP 3%의 변화는 6%의 소득변화를 가지오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CEB의 변화는 1971년에서 1972년 사이 무려 4.7%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6) 수출보조금 및 각종 지원제도 등이 그 예이다.

(7) 金炳日, 「豫算制度」,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KDI, 1981. 5.

作用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變動을 더 촉진 확대시키는 方向으로 움직여 왔다고 할 수 있다.

III. 成長과 인플레이션의 財政效果

財政이 成長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成長이 歲入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으나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⁸⁾

歲入의 主源泉을 이루고 있는 租稅의 경우 일반적으로 名目所得 및 名目去來額을 課稅標準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租稅函數는 다음과 같이 表現될 수 있다.

$$T = T(PQ). \tag{3}$$

여기에서 T 는 租稅額, P 는 物價, 그리고 Q 는 實質所得 혹은 實質去來量을 의미한다. 式(3)을 전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dT = T'(QdP + PdQ). \tag{4}$$

式(4)에서 보는 바와 같이 租稅構造(T)의 變化가 없더라도 稅收의 變化가 발생할 수 있다.⁽⁹⁾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租稅가 名目值에 連結되어 있기 때문인데 현실적인 統計資料에 나타나는 稅收의 增加는 이 외에도 政府의 意圖的 稅率變化에 따른 稅收의 增減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政府의 意圖的 稅率變化가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所得成長率에 따른 租稅收入의 變化는 浮揚性(buoyancy)에 의한 것과 彈力性(elasticity)에 의한 것으로 區分되고 있다. 따라서 이 分析에서 關心의 대상은 政府의 意圖的 變化가 없는 彈力性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表 2>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表 2>를 보면 우리나라의 1972~80年間 租稅彈力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所得稅의 경우는 所得稅의 累進度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消費稅의 경우는 특히 物價上昇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租稅構造는 間接稅 中心으로 變化해 왔으며, 특히 1977년에 도입한 附加價值稅는 稅收가 인플레이션의 變化에 민감해지도록 하는 중요한 要因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은 또한 政府의 豫算決定에도 영향을 미친다. 現實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

(8) CNB 산출에서 $t_o Y_t$ 는 소득성장에 따른 세입의 비례적 변화를 經濟의 變化가 財政에 미친 영향 즉, 財政의 自動的 反應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때, 歲入의 탄력성이 1이 아닌 경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념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9) 헬러는 이를 'fiscal drag'이라 부르고 있다. Walter W. Heller, *New Dimensions of Political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p. 65.

〈表 2〉 稅目別 浮揚性과 彈力性的 差異⁽¹⁾(1972~80年)

稅 目	浮揚性 (1)	彈力性 (2)	政策效果 (3)=(1)-(2)	政策效果의 크기 ⁽²⁾ (3)/(1) 또는 (2)
所得課稅	1.128	1.264	△0.136	10.75
所得稅	0.983	1.341	△0.358	26.69
法人稅	1.344	1.207	0.137	10.19
社會保障負擔金	1.356	1.356	.	.
資產課稅	△0.003	0.622	△0.625	100.48
消費課稅	1.212	1.047	0.165	13.61
一般消費稅	1.659	1.251	0.408	24.59
個別消費稅	0.941	0.937	0.004	0.42
專賣益金	1.130	0.874	0.256	22.65
關稅	1.401	1.086	0.315	22.48
其他稅	1.151	0.881	0.270	23.45
稅收合計	1.195	1.147	0.048	4.01

註：(1) GNP에 관한 浮揚性과 彈力性的 差異.

(2) 政策效果가 陰인 경우 彈力性係數에 대한 比重.

자료：차병권, 『세수추계모형의 정밀화와 중·단기 세수전망』, 한국경제연구원, 1983. 5, p. 72.

되는 經濟에서 政府는 公共의 實質資源配分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의한 영향을 배제시키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政府는 다음 해의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豫算決定에 적용하여 원하는 實質水準을 유지시키려 하므로 인플레이션은 名目支出水準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豫算을 實質水準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경우에 특히 심한 인플레이션 下에서는 名目水準이 급상승하게 되므로 經濟의 安定化라는 관점에서 볼 때 逆效果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政府의 豫算決定에 어느 정도 制限의이기는 하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이러한 問題를 고려함에 있어서 豫想된 인플레이션과 豫想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의 區別은 중요해진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특히 正常的인 인플레이션의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의 實物의 흐름에 대한 충격은 극히 미약하므로 政府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원하는 實質水準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不確實性下에서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때에 政府는 이에 對應하여 다소간 修正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政府의 反應은 歲入·歲出의 構造와 政府의 調整에 의해 야기되는 認知可能한 費用(perceptible costs)—經濟安定의 파괴 등의 모든 社會的 費用—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外部的 價格變化에 對應하여 意思決定을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程度는 豫算의 各項目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政府決定의 內生化 정도는 이들 各項目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政府의 인플레이션에 對應하는 價格

및 支出決定의 內生化 程度와 外部的 壓力의 크기에 따라 支出水準의 增加幅과 그에 따른 相對價格效果의 크기가 결정된다.

支出水準의 決定에 영향을 미치는 價格變化의 內生化 정도를 살펴보면 支出의 각 범주별로 다음의 차이가 난다.

첫째는 財貨와 用役의 購入에 있어서 價格의 上昇은 豫想되었든지 아니든지 즉각 직접적으로 政府에 轉嫁된다. 이 경우 政府가 취할 수 있는 唯一한 裁量的 決定은 支出水準을 이에 따라 增加시키느냐 아니면 名目水準을 유지해 實質支出水準을 減小시킬 것인가 하는 것 뿐이다.

둘째는 移轉支出 및 補助金인데 이 範疇의 支出은 原則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適應에 있어서 그 支出時機와 程度는 비교적 裁量的으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範疇에 속하는 支出이 法的으로 物價水準과 連動되어 있다든가 公企業 및 地方政府의 赤字補填을 위한 補助金 혹은 主要財貨 및 用役의 價格支持를 위한 支出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는 賃金과 俸給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公共部門과 民間部門 間的 實質賃金差와 公共部門 勞動組合의 壓力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後者の 要因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公共部門과 民間部門 間的 實質賃金의 差가 決定要素라고 할 수 있다.⁽¹⁰⁾

넷째는 政府負債에 따른 各種 支出로서 이는 인플레이션이 利率에 미치는 影響, 經常財政赤字水準과 이것이 政府總負債에서 차지하는 比重, 財政赤字를 補填하는 財源과 費用, 負債償還 빈도 등에 의해 달라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資本市場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赤字補填은 韓銀借入과 海外借入에 의해 거의 충당되고 있고, 그나마 國公債도 거의 強制債의 성격이 강하여 일종의 租稅와 같이 취급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섯째는 政府貸出로서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借入者들이 政府에 對하여 각종의 요구를 하게 되지만 이 때 政府는 상당한 정도의 裁量的 決定權을 가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다섯개 範疇에 따라 우리나라의 中央政府財政을 살펴볼 때 比較的 裁量權이 발휘되는 移轉支出項目인 家計 및 非營利機關 移轉支出과 純融資가 全體 歲出에 있어서 차지하는 比重은 <表 3>의 內容과 같다.

<表 3>을 통해서 볼 때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 소폭적으로 政府의 裁量權은 增大되어 왔다.

(10)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實에서는 오히려 公共部門 賃金政策이 民間部門을 先導하고 指示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表 3〉 인플레이션 下 裁量可能項目

(단위 : 億원, %)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 總 歲 出	4687	5485	7462	7212	12030	17653	25189	32744	44080	59990	76820	101265
(2) 非營利移轉	10	41	65	103	156	257	598	619	782	1429	1932	234
(3) 家計移轉	383	456	526	490	836	892	1106	1618	2099	3321	5057	6095
(4) 純 融 資	260	66	-51	140	1376	1646	2252	4701	6261	7660	11200	17737
[(2)+(3)+(4)]/(1)	14.0	10.3	7.2	10.2	19.7	15.8	15.7	21.2	20.7	20.7	23.7	25.8

자료 : 재무부, 『한국의 재정통계』, 1981.

1970년에 이러한 項目의 比重은 總歲出의 14%였으나 점차로 이것이 감소되어 1972년에는 7.2%까지 감소하였었다. 그러나 그 후 거의 每年 裁量可能한 項目의 比重은 증가하였다. 1975년에 이것은 15.8%였으며 1978년에 20.7%, 그리고 1981년에는 25.8%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裁量權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物價上昇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名目支出의 自體 增加率은 40%線에서 1977年 이후에는 30%線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인플레이션 壓力에 대하여 政府가 부분적이나마 反인플레이션의 裁量權을 시도했다는 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財政의 높은 硬直度는 財政이 인플레이션에 적응하며 유연하게 움직이기에는 적지 않은 限界點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IV. 맺 음 말

1960年代는 더욱 그러하였으나 1970年代의 財政運用도 經濟開發을 主目的으로 하는 豫算 編成 및 그에 필요한 財源調達이 特徵을 이루었었다. 이처럼 財政이 成長目標達成을 위한 經濟開發計劃의 한 手段으로만 취급되어 오는 과정에서 安定側面에서는 上述한 바와 같은 問題들을 내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經濟運用이 民間主導로 전환해야 한다는 當爲性 그리고 財政規模의 對 GNP比重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財政은 과거와 같이 資源의 配分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再分配機能이나 安定機能도 동시에 強化시키는 방향으로 運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세가지 財政機能에 대한 同時的 考慮와 이러한 原則에 입각한 財政運用은 國民經濟運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政策道具로서 財政의 位置를 확립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財政은 制度나 運用의 측면에서 몇가지 변화를 수반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豫算制度를 改善하여 豫算이 中長期的 計劃 하에서 景氣變動 및 國民欲求 등 變化하는 與件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豫算編成 및 運用에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現在와 같은 單年度 中心의 豫算編成을 보완하여 財政의 中長期的 經濟

의 效果가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制度的 장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政府事業의 效率性を 提高시켜 財源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稅收確保의 手段으로 逆進的 租稅構造를 심화시키는 페단을 막아 줄 수 있고 한편 效率的 支出을 통하여는 景氣變動에 대한 적응을 容易하게 하여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中期財政計劃은 이러한 側面에서 상당히 유용한 試圖라고 할 수 있다. 向後 몇 年間의 經濟變化라는 테두리 안에서 확보가능한 財源의 量과 그에 맞추어 필요한 支出을 결정하고, 全體計劃의 한 部門으로서 다른 部門과의 相互作用을 合理的으로 조정해가는 과정에서 財政運用은 中長期 뿐만 아니라 短期目標을 올바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中期財政計劃을 5個年 經濟計劃과 상호 일관성 있게 作成하도록 하여 財政運用을 5個年の 年次別 目標에 맞게 連動化시킴으로써 財政運用의 效率성과 流動性を 기하고 이것을 통하여 財政의 세가지 機能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財政의 安定化機能을 調和있게 強化하는 길일 것이다.